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이 영 숙*

국문초록

본 논문에서는 Clausing(2007)의 분해에 따라 법인세율, 법인소득의 과세비율, 이윤율, 경제내 법인부문 비중을 설명변수로 하는 기본 회귀모형과 기타 주요변수를 추가하여 확장된 회귀모형을 추정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법인세수에 관련되는 거시경제변수와 미시적인 납세신고자료를 이용한 OLS 추정 결과, 법인세율(corporate tax rate)은 법인세수에 비선형적인 관계로 매우 유의한 영향을 주고, 법인세 과세기반(corporate tax base)에 관련되는 경제성장률과 경제내 법인부문 비중 역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 법인세 명목세율과 실효세율의 차이도 법인세수 결정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제어: 법인세수 분해, 법인세율, 비선형성, 세율격차, 법인부문 비중, 비과세 · 감면

투고일: 2018. 11. 13. 수정일: 2018. 11. 27. 게재 확정일: 2018. 11. 27.

* 국회예산정책처 재산소비세분석과장(ysook@assembly.go.kr)

I. 서론

법인세는 법인의 영업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조세로, 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와 함께 국세수입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기간세목의 하나이다. 법인소득의 경우 동일한 과세기반에 대해, 법인세가 부과된 후에 궁극적으로 개인소득으로 귀속되며 다시 소득세가 부과된다는 점에서 이중과세(double taxation)의 문제 등 과세근거를 둘러싼 많은 논쟁이 있어 왔으나, 근대국가 이후 정부의 크기가 확대되는 가운데 완전과세가 어려운 소득세를 보완하는 측면 등에서 존속되어져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1980년대 이후 ‘넓은 세원-낮은 세율’의 글로벌 조세기조에 따라 법인세율은 하향추세를 보여 왔으나, 전체 국세 중 법인세수 비중은 1970년~1980년대 중반의 7~8%대에서 높아져 1990년대에는 10%를 상회하였고 2000년대 중반에는 18%대로 상승하였다. 이렇듯 법인세는 현대국가의 재정에서 중요한 세목으로 자리잡았고, 법인세수의 확보는 재정운용의 주요한 과제가 되었다.

법인세수는 크게 보아 과세기반이 되는 법인소득과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법인세율 및 조세감면에 의해 결정되는데, 법인소득은 경제상황이나 개별 법인의 경제활동으로부터 받는 영향이 큰 반면, 법인세율 및 조세감면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입법적으로 결정되는 측면이 크다. 단, 우리나라와 같이 법인세율이 누진적 구조인 경우에는 법정세율이 유지되더라도 법인소득 규모에 따라 적용되는 세율수준이 달라질 수 있고, 조세감면 역시 경제활동과 연계되는 세액공제(tax credit)의 비중이 높음에 따라, 경제여건이 법인의 세부담 수준에 미치는 영향은 보다 커지게 된다. 이에 따라 법인세수는 다른 세목에 비해 경기에 따른 변동성이 큰 특징을 보여왔다. 가까운 예시로, 국세수입 징수액이 정부 예산안에 미치지 못 하였던 2012~2014년의 경우, 그 주요한 이유 중 하나가 법인세수의 결손이었다. 2012~2014년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회복세를 보이던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때로, 법인세수 실적은 정부 예산안의 전망치를 하회하였을 뿐만 아니라 전년대비로도 감소세 혹은 낮은 수준의 증가세를 보이며 국세수입 결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그런데 동 시기에 2008~2010년의 세율인하 이후 법인세율은 유지되고 있었고 대기업을 중심으로 조세감면 정비가 이루어져 법인세수의 확보가 보다 용이하였음을 감안하면, 법인세수의 결손은 경기 후퇴에 따른 법인소득 부진의 영향일 것이다. 반면, 동일한 수준의 법인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명목적인 세부담 수준을 결정하는 법인세율이나 조세감면이 법인세수에 영향을

줄 것이다. 우리나라의 법인세수 비중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하락세를 보이기도 했는데, 여기에는 2008~2011년 동안 낮아진 법인세율 인하의 영향이 작용했을 것이다.

이렇듯 법인세수가 전체 국세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가운데 경제여건이나 제도 변화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큰 특징으로 인해 안정적인 세수관리가 쉽지 않은 점 등은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해외 문헌에서는 법인세율과 법인소득을 주요 요인으로 하여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다. 법인세율 영향과 관련하여, Gropp and Kostial(2000)은 법인세의 과세대상에서 해외소득을 제외하는 국가들의 법인세수가 법인세율에 대한 민감도가 높고, EU국가들의 경우 고세율 국가일수록 세율 동조화(harmonization)에 따른 법인세수 증가효과가 있음을 보였다. Bartelsman and Beetsma(2003)는 국가별 법인세율과 OECD 평균 법인세율과의 차이를 이용하여 이전가격(transfer pricing)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저세율 국가로의 법인이익의 이동(profit shifting)이 있었음을 보였다. 과세기반의 영향과 관련하여, Auerbach and Poterba(1988)와 Douglas(1990)는 각각 1959~1985년 미국 법인세수의 하락세와 1960~1985년 캐나다 법인세수의 하락세에 대하여, 법인세율 하락보다는 이윤율 저하의 영향이 보다 주요했음을 보였다. Devereux et al.(2004)은 1980년 이후 영국의 법인세율 인하추세에도 불구하고 금융부문(financial sector) 성장에 따른 이윤율 향상에 따라 법인세수는 증가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국내 문헌에서는 김학수(2009), 이영·조명환(2010), 김유찬(2017) 등에서 법인세 실효세율이나 법인세율의 결정요인을 주제로 하는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졌고, 법인세수에 대한 결정요인을 분석한 연구는 김우철(2007)의 경우를 볼 수 있다. 김우철(2007)은 한국신용평가사의 기업재무자료를 이용한 미시분석을 통해,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 법인세수 증가에는 세부담 증가(즉, 실효세율 상승) 보다는 기업의 수익률 개선이나 기업규모별 소득격차 심화, 전체 법인수 증가 등의 영향이 컸던 것으로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Clausing(2007, 이하 ‘Clausing’)의 방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Clausing은 많은 국가들에서 경제규모 대비 법인세수 비중이 상승해 온 것과 관련하여,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을 주요 지표들로 분해하고, OECD 29개 국가들의 1979~2002년 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Clausing의 연구는 법인세수의 분해식에 기초하여 관련 설명변수들을 확장시킴으로써, 법인세수 관련 주요 경제변수 및 조세 변수들의 영향을 종합적으로 볼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OECD 국가군 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법인의 해외소득에 대한 과세방식의 영향 등

국제적 요인을 반영할 수 있었던 반면, 국가군의 선택이 분석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개별 국가들에 보다 고유한 경제변수나 미시적인 조세변수의 영향을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본 논문에서는 Clausing의 방법을 적용하여 우리나라의 경제변수와 미시 조세 변수를 중심으로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을 살펴보았다. 회귀식을 통한 실증분석을 위해, 국민계정상의 자료를 이용하여 Clausing의 분해식에서 제시한 경제변수에 대한 대리변수를 구성하였고, 법인세율과 소득세율 자료를 1970년대부터 구축하였다. 다만, Clausing에서 과세기반의 변화와 관련하여 일인당 GDP나 실업률 등을 추가한 것과는 다르게, 경제여건을 보다 직접적으로 반영하는 명목GDP 순환변동치와 경제성장률 변수를 이용하였다. 조세변수들은 국세통계연보 자료를 이용하여 1980년 이후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 이월결손금 등을 장기 시계열 자료로 구성하였다.

본 논문의 추정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법인세수는 Clausing에서와 같이 법인세율과의 비선형(non-linear) 관계가 뚜렷하고, 과세기반과 관련해서는 경제성장률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Clausing의 분해식에서 제시한 경제변수들은 경제내 법인부문 비중을 제외하고 대체로 유의성이 높지 않았는데, 여기에는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 경제구조의 특징이 반영되어 국민계정상의 영업잉여 등이 법인세 관련 대리변수로서의 적합도가 다소 떨어진 영향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경제내 법인부문 비중은 대체로 법인세수에 정(+)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또한 법인세 감면효과를 반영하는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의 차이는 법인세수를 감소시키는 방향에서 유의성이 높게 나타났다. 다만, Clausing에서는 세원이동과 관련하여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의 격차가 법인세수의 증가요인으로 유의하였던 데 반해,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수와의 연관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래의 2장에서는 Clausing의 법인세수 분해 방법을 간략히 정리하여 소개하였고, 3장에서는 법인세수 및 관련 세율 자료, 국민계정 자료를 이용해 구한 경제변수들을 정리하였다. 4장에서는 Clausing의 방식에 따른 기본회귀식과, 관련 설명변수를 추가시킨 확장된 회귀식을 추정한 결과를 정리하였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이러한 자료와 분석결과를 요약하고, 관련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였다.

II. 분석방법 및 자료

1. 분석 방법: Clausing(2007)

Clausing은 GDP 대비 법인세수의 비율을 법인세수에 관련되는 주요 지표들로 분해하고, OECD 29개 국가들의 1979~2002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법인세수 곡선을 추정하였다. Clausing은 다음과 같이 GDP 대비 법인세수를 법인세율(T), 법인이윤 중 과세되는 소득 비율(f), 법인의 이윤율(Π), 경제내 법인부문 비중(CS)의 4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frac{\text{Corporate Tax Revenue}}{\text{GDP}} = T \times f \times \Pi \times CS \quad (1)$$

$$\begin{aligned} \text{단, } T &= \frac{\text{Taxes Due}}{\text{Tax Base}}, \quad f = \frac{\text{Tax Base}}{\text{Corporate Profits}}, \\ \Pi &= \frac{\text{Corporate Profits}}{\text{Corporate Value Added}}, \quad CS = \frac{\text{Corporate Value Added}}{\text{GDP}} \end{aligned}$$

법인세수의 결정은 과세기반과 법인세율에 기초하는데, (1)식의 ' T '항을 제외한 나머지 3개 항(f , Π , CS)은 과세기반에 관련된 항목이다. 과세기반(Tax Base)은 과세대상이 되는 법인소득으로, 회계결산서상 법인소득을 세무조정한 세법상 소득이다. (1)식의 두 번째 항인 ' f '는 법인의 과세대상소득과 회계 결산상 법인의 이익과의 비율로, 동 비율의 값이 클수록 법인의 해당연도에 발생한 실제 이윤 대비 과세대상소득이 상대적으로 커져, 세부담이 높아지게 된다. 세 번째 항인 ' Π '는 경제 전체의 법인부문에서 발생한 부가가치와 기업 이윤과의 비율로, 기업의 이윤이 생산활동을 통한 부가가치 부문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높을수록 동 변수의 값이 커지게 된다. 네 번째 항인 ' CS '는 전체 GDP에서 기업 부문에 의해 발생한 부분의 비율로, 경제의 부문간 구조적 특징을 반영하며 개인 보다 법인부문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동 변수의 값이 높게 나타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1)식의 첫 번째 항은 실효세율(the effective tax rate)에 해당되는데, 법정 명목세율과 세액공제·감면에 따른 감면율에 의해 결정된다. 명목세율이 높더라도 감면율이 큰 경우 실효세율은 낮아질 수 있고, 반대로 명목세율이 낮더라도 감면율이 작은 경우에 실효세율은 높아질 수 있다.

Clausing은 (1)식에 기초하여 법인세율 변화에 대한 법인세수 변화식을 아래와 같이 유도하였다.

$$\frac{\partial Revenue}{\partial T} = f \times \Pi \times CS + T \times \frac{\partial f}{\partial T} \times \Pi \times CS + T \times f \times \frac{\partial \Pi}{\partial T} \times CS + T \times f \times \Pi \times \frac{\partial CS}{\partial T} \quad (2)$$

(2)식의 첫 번째 항은 법인세율의 변화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을 나타낸다. 즉, 과세대상소득의 변화가 없다면, 일반적으로 법인세율 인상은 법인세수 증가효과를 갖을 것이다. 두 번째에서 네 번째 항까지는 법인세율 변화가 과세대상소득에 미치는 영향으로, 법인의 조세회피(tax avoidance)와 관련된다. 두 번째 항은 법인의 이윤 중 과세대상소득의 비율을 조정하는 것이고, 세 번째 항은 법인의 부가가치 창출분 중 회계상의 법인이윤에 반영되는 비율로, 가격이전 등을 통한 이윤의 해외이전 등과 관련된다. 네 번째 항은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법인부문 비중으로, 개인과 법인간 소득귀속이나 법인부문의 해외 이동 효과를 반영한다. 예를 들어 법인세율이 인상되어 법인이 조세회피 유인을 갖는 경우, 과세대상소득을 축소하려 할 것이다. 두 번째 항과 관련해서는, 비과세되는 소득의 비중을 높이거나 세무조정시 손금산입과 익금불산입의 항목 조정을 크게 하려는 조세회피 유인이 있을 수 있다. 세 번째 항은 법인이 부채를 통한 자본조달 등을 통해 비용을 높임으로써 기업의 이윤율을 낮추는 사례를 생각할 수 있다. 네 번째 항은 높아진 세부담을 회피하기 위해 법인 활동의 소득부문으로의 전환이나 국내 법인의 해외 이전 등에 따라 경제전체에서 차지하는 법인비중이 작아지는 경우가 해당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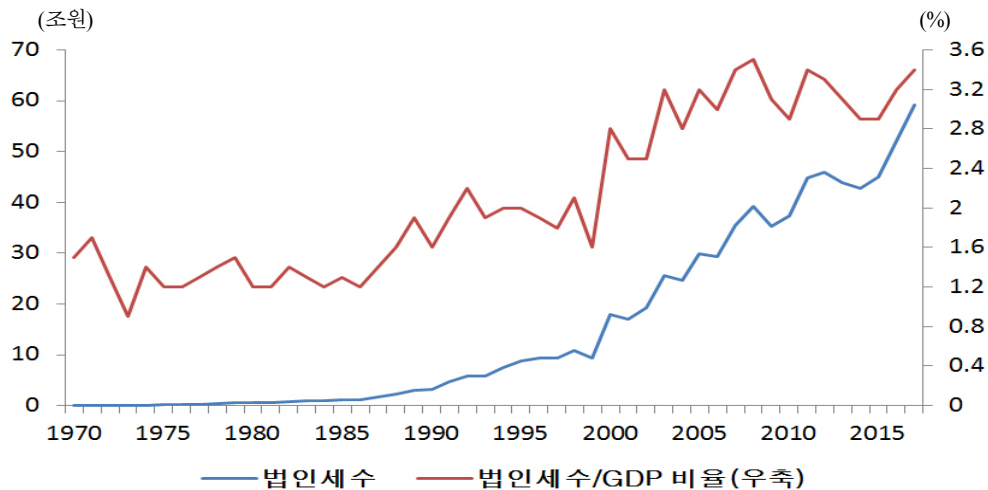
이렇듯 법인세율의 변화는 세율자체에 따른 세수변동 뿐만 아니라 과세대상소득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발생하는 세수변동 효과도 중요하게 감안되어야 한다. 세율인상 자체는 법인세수를 증가시킬 수 있으나, 세율인상이 과세대상소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보다 큰 경우에는 법인세수를 감소시킬 수 있다.

2. 분석자료

가. 법인세수(tax revenues)

1970~2017년까지 우리나라 법인세수는 다음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높은 증가세를 보여왔는데, 특히 2000년대 이후 법인세수 규모가 큰 폭으로 확대되는 모습을 보였다. 명목GDP 대비로 볼 때도 대략 1980년대 중반까지는 '1'을 조금 상회하며 GDP와 유사한 속도로 증가하였으나, 1990년대에는 '2'로 근접하며 GDP 대비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2000년대에는 '3'을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아졌다. 법인세수 자체의 규모나 GDP 대비 비율을 볼 때, 대체로 2000년대 이후 법인세수의 역할이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1] 법인세수 및 GDP대비 비율 추이: 1970~2017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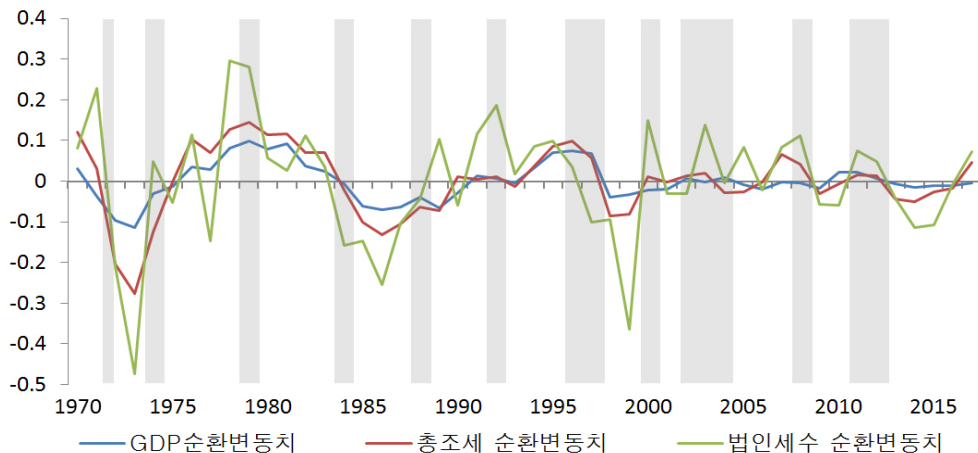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법인세수의 경기에 대한 민감도를 보기 위해 명목GDP와 총조세(국세와 지방세의 합계액), 법인세수 각각에 대해 자연로그를 취해 선형화한 후에 HP(Hodrick-Prescott) 필터를 적용하여, 각 변수들의 순환변동치(cyclical component)를 비교하였다. 다음의 [그림 2]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총조세의 순환변동치는 변동폭이 명목GDP 대비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지만 거의 유사한 패턴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법인세수의 경우 각 순환변동치의 고점과 저점의 차이가 명목GDP나 총조세 대비 큰 폭으로 벌어지며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볼 수 있다.¹⁾ 특히, 제 4순환주기(1988.2.~1989.9.)를 제외하면, 법인세수의

순환변동치는 경기순환 주기상 고점에서 저점으로 가면서 큰 폭의 감소세를 보이며 경기에 대한 세수 민감도가 높은 모습이다. 이는 명목GDP나 총조세의 경우 상대적으로 경기에 둔감하거나 경기와 다소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부문이 상쇄효과를 가지며 변동성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 반면, 법인세수는 과세기반이 되는 법인소득이 경기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뿐만 아니라 법인세의 누진세율구조에 따라 법인소득 변화시 세율수준도 달라지는 효과가 더해져 세수의 변동성이 보다 커지게 된다. 예를 들어, 경기호황기에는 법인소득이 증가하며 법인세수가 증가하게 되는데, 소득증가에 따라 누진세율이 높아지는 경우 추가적인 법인세수 증가효과가 더해지고, 여기에 경기호황에 따라 조세지원의 이유가 사라지며 감면혜택이 줄어들어 다시 추가적인 법인세수 증가효과가 더해지게 된다. 경기불황기에는 법인소득과 법인세율, 조세감면이 호황기와는 반대방향으로 움직이며, 법인세수 감소효과가 확대될 것이다.

[그림 2] 순환변동치 비교: 1970~2017년, 명목GDP vs. 총조세 vs. 법인세



주: 1) 순환변동치는 자연로그를 취한 변수값에 HP(Hodrick-Prescott)필터를 적용하여 산출

2) 음영부분은 통계청이 발표한 경기순환 주기로, 고점(peak)과 저점(trough)으로 구성

자료: 국세청,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나. 세율(tax rat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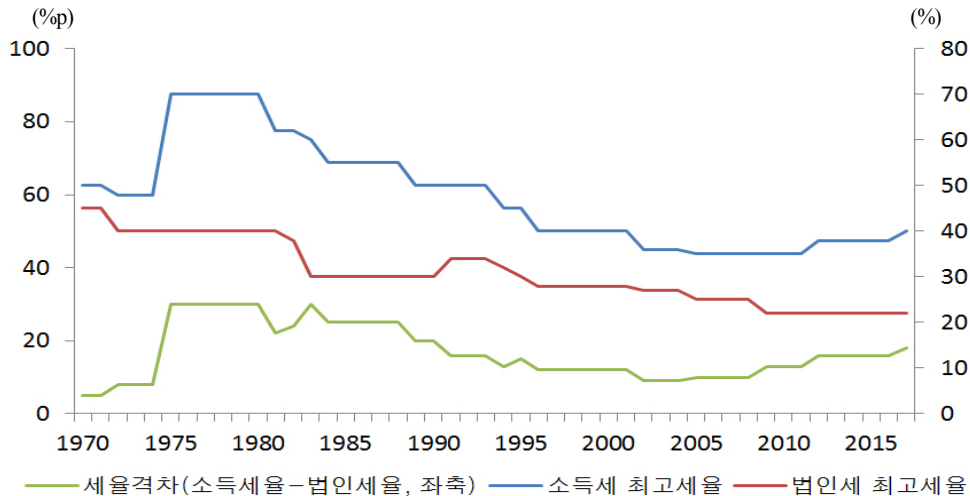
1970~2017년 중 법인세 최고세율은 1970년대 최고 40~45%대에서 인하되는 추세를 이어와 2009년 이후 22%로 낮아졌다.²⁾ 다만, 1991년에는 과다유보과세제도 폐지 등에 따라

1) 명목GDP의 순환변동치와 상관계수를 보면, 총조세의 순환변동치와는 0.89, 법인세수의 순환변동치와는 0.58로 나타난다.

2)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금액 3천억원 초과 법인의 경우 최고세율 25%를 적용

법인세율이 30%에서 34%로 인상된 바 있으나, 1994년부터 다시 세율인하 추세가 진행되었다. 동일한 기간에 소득세 최고세율은 1970년대 70%³⁾에서 인하되는 추세가 지속되며 2011년에 35%로 낮아졌다. 이후 소득세 최고세율은 2012년부터 인상되는 추세로 전환되어 2016년부터는 40%로 높아졌다.⁴⁾ 이러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인하 추세는 1980년대 이후 진행된 ‘낮은 세율-넓은 세원’의 글로벌 조세정책 기조를 반영한 것으로, 양 세율의 격차는 1970년대 30%p에서 낮아져 2002년에는 9%p로 좁아졌으나, 이후 2000년대 중반 이후 법인세율이 인하되며 확대되었고, 2012년부터는 소득세율 인상에 따라 다시 확대되어 2017년은 18%p를 기록하였다.⁵⁾

[그림 3] 최고세율 및 세율격차 추이: 1970~2017년, 소득세율 vs. 법인세율



자료: 국세청 등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법인세율은 누진세율 체계로 되어 있어, 전체 법인에 평균적으로 적용되는 세부담 수준은 전체 과세표준금액과 전체 법인세 부담액으로 산출하는 평균세율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다. 이때 법인세 부담액을 법정 법인세율이 적용된 산출세액으로 하면,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나누어 평균명목세율을 구할 수 있다. 자료의 입수가 가능한 1989년 법인소득분부터 이를 구하면 1993년까지 상승세를 보인 후 하락해, 1996~1999년에서와 같이 상승세를 보인 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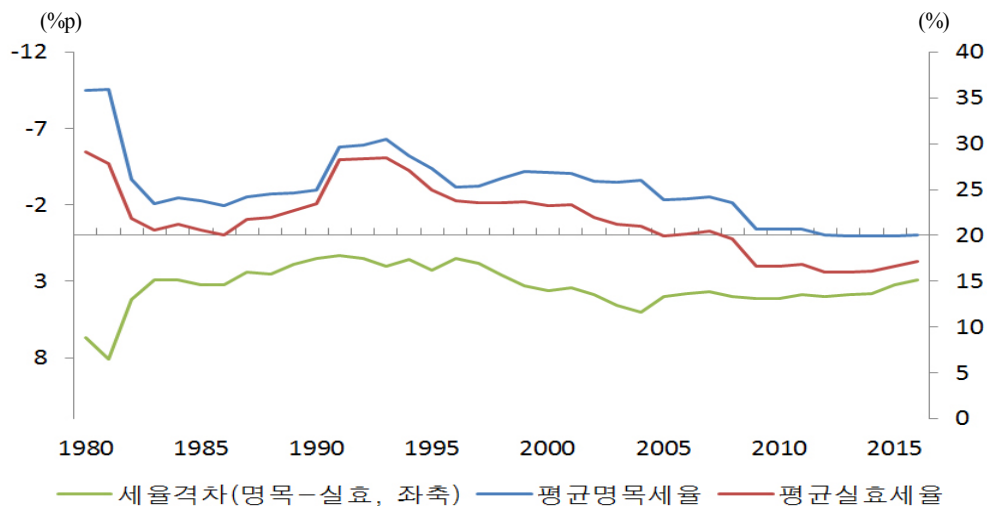
3) 1974년 대폭적인 세제개편에 따라 기존의 9단계 7~48%의 누진세율 체계에서 16단계 8~70%로 변경

4) 2017년 세법개정에 따라 2018년부터는 과세표준금액 5억원 초과인 경우 최고세율 42%를 적용

5) 2017년 세법개정을 반영하면 2018년 소득세율과 법인세율 격차는 17%p(42%-25%)로 축소됨

간도 있기는 하나 대체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였고, 특히 법인세율이 인하된 2004~2005년과 2008~2009년에 하락폭이 큰 것으로 나타난다.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에 따른 조세감면을 제외한 결정세액을 법인세 부담액으로 하면, 이를 과세표준금액으로 나누어 평균 유효세율을 구할 수 있다. 평균유효세율은 전체적으로 평균명목세율과 추세적인 움직임을 같이 하나, 시기에 따라 조세감면의 정도가 달라 평균명목세율과의 격차는 변화하는 추이로 나타난다. 대체로 1996~2004년에 평균명목세율 대비 평균유효세율이 하락폭이 큰 데, 특히 법인세율 인상에 따라 평균명목세율이 상승했던 1996~1999년의 경우 조세감면이 확대되며 평균유효세율은 상승하지 않고 이전의 수준에서 유지된 것을 볼 수 있다. 2004년 이후에는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유효세율의 하락세가 유사한 수준으로 진행되며 4%p의 격차가 유지되었는데, 2014년 이후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법인세 감면제도 정비에 따라 평균유효세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양 세율의 격차가 2%p 후반대로 좁혀졌다. 이러한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유효세율의 격차는 대체로 법인에 대한 평균적인 조세감면의 정도를 반영함으로써 법인세수에 대한 설명력을 가질 수 있다.

[그림 4] 법인세율 및 격차 추이: 1980~2016년, 평균명목세율 vs. 평균실효세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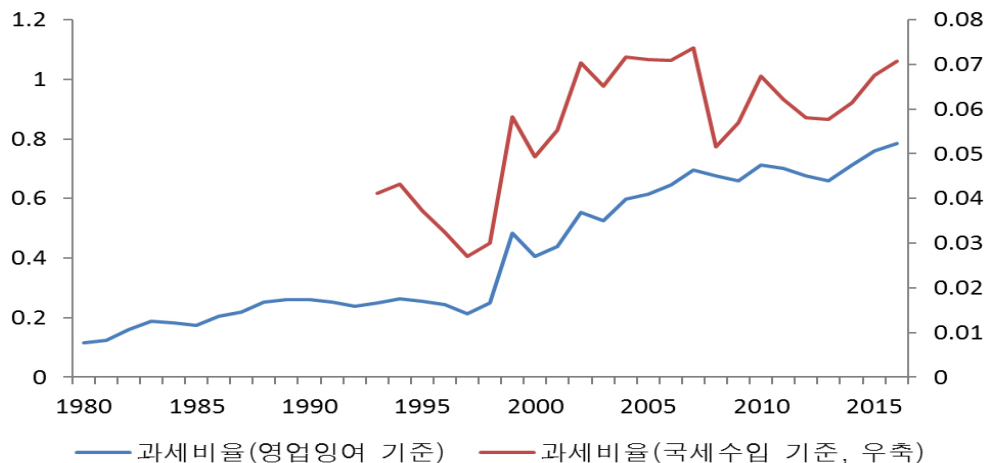
- 주: 1)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의 차이로 구한 세율격차는 세액공제·감면에 따른 세부담 감면효과를 나타내기 위하여 축의 크기를 역으로 배열
2) 평균명목세율은 법인세 산출세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나눈 비율값이고, 평균실효세율은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감면액을 제한 최종 법인세액을 과세표준금액으로 나눈 비율값임

자료: 국세청 신고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다. 법인세수 관련 변수

아래에서는 Clausing의 분해에서 연관 변수로 제시한 과세비율(f), 이윤율(Π), 기업부문 비중(CS)에 대해, 우리나라 국민계정과 국세통계연보의 자료를 이용하여 상응하는 대리변수를 구성하였다. 우선 과세비율(f)은 Clausing에서 법인이윤에 대한 과세대상소득의 비율로 정의되었는데, 과세대상소득의 경우 국세통계연보상의 ‘각사업연도소득’이 해당되나, 법인이윤은 직접적인 변수가 없어 국민계정상의 ‘영업잉여’(operating surplus)와 국세통계연보상의 ‘수입금액’을 대리변수로 하였다. 영업잉여는 생산활동에서 발생한 잉여(혹은 적자)로서 금융자산의 이자, 유형 비생산자산의 임료 등을 차감하기 전 값으로, 가계가 소유한 비법인기업의 잉여도 포함되는 단점이 있기는 하나, 법인이윤에 가장 가까운 거시변수로 볼 수 있다. 수입금액은 국세통계연보에서 제공하는 법인세 신고법인의 회계결산서상의 값으로, 영업비용 등이 차감되지 않기는 했으나 법인세의 과세대상소득이 되는 ‘각사업연도소득’이 기업회계상의 수입과 지출에 대한 손금산입(혹은 불산입) 및 익금산입(혹은 불산입)의 세무조정을 거쳐 산출된다는 점에서 기업이윤에 대한 대리변수로 볼 수 있다. 다만, 국민계정상의 영업잉여는 장기 시계열이 가능한데 반해, 법인의 수입금액은 국세통계연보상 자료의 한계로 1990년대 초반 이후의 기간에 한하여 시계열 자료가 가능하다. 다음 [그림 5]에서 볼 수 있듯이 두 지표의 추세적인 움직임이 거의 유사하여, 본 논문에서는 과세비율(f)을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을 국민계정상의 영업잉여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그림 5] 과세비율(f) 추이: 1980~2016년, 영업잉여 기준 vs. 수입금액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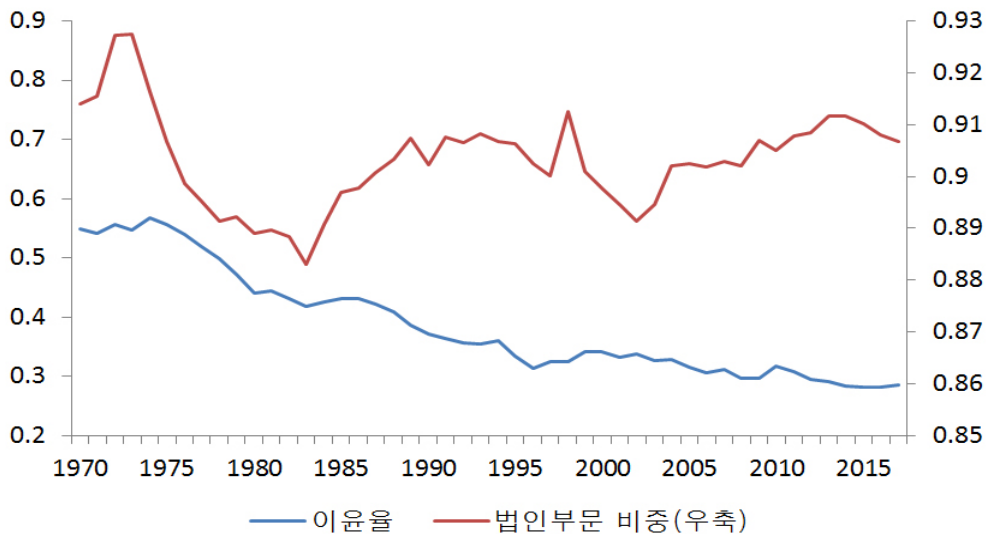


자료: 국세청,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이윤율(II)은 Clausing에서 법인부문에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한 법인이윤의 비율로 정의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국민계정상의 ‘총부가가치 대비 영업잉여’의 비율을 구하여 대리변수로 하였다. 동 변수는 국내에서 생산된 산출물의 부가가치 중 기업의 이윤으로 귀속되는 비율을 나타내는 값으로, 법인의 창출된 부가가치를 국내 영업잉여로 반영할수록 값이 커지고, 반대로 부가가치가 국외로 나가는 부분이 많을수록 작아질 것이다. 변수를 구성하는 값 중 ‘영업잉여’는 앞서 과세비율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총부가가치’는 산출액에서 중간소비를 차감한 값으로, 개별 생산자, 산업 또는 부문이 GDP에 기여한 금액이다.

기업부문비중(CS)은 Clausing에서 GDP 대비 법인부문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비율로, ‘GDP 대비 총부가가치’의 비율로 하였다. 이는 경제전체에서 법인부문의 경제활동에 의해 창출되는 부가가치의 비율로, 동 비율이 높다면 법인세 과세기반이 세목 대비 상대적으로 커지며 법인세의 비중이 높아질 것이다.

[그림 6] 이윤율(II), 기업부문 비중(CS) 추이: 1970~2017년



자료: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Ⅲ. 실증분석 결과

본 장에서는 명목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을 종속변수로 하여, 앞서 살펴본 관련 경제 및 조세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하는 OLS모형 분석을 하였다. 변수들을 선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명목GDP 대비 법인세수, 법인소득의 과세비율 등을 포함하여 자연로그를 취하였고, 증가율 변수는 로그차분을 적용하였다. 설명변수는 Clausing의 분해에 따라 법인세율, 법인소득의 과세비율, 이윤율, 경제내 법인부문 비중을 기본으로 하되, 이외 법인세수 변동에 중요한 경기적 요인을 반영하기 위해 명목GDP의 HP필터 순환변동치와 명목GDP 증가율을 추가하였고, 법인세 부문의 조세회피 효과를 감안하기 위해 해외직접투자 변수를 추가하였다. 이외 조세변수로서 조세감면의 정도를 반영하기 위해 법인세의 평균명목세율과 평균 실효세율의 차이 변수를 추가하였고, 소득세와 법인세의 부문간 이동에 따른 법인세수효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소득세 최고세율과 법인세 최고세율간의 차이 변수를 추가하였다. 자료는 경제변수들과 조세변수 중 세율변수들은 1970년부터 구축할 수 있었으나, 조세변수 중 법인의 신고 상세내역에 해당하는 변수(예를 들어, 법인의 각사업연도소득 등)들은 1980년부터 구축할 수 있었다. 이는 1980년부터 법인세 부과가 과세당국의 고지방식에서 법인의 신고방식으로 변경되면서 국세통계연보의 법인세 상세자료의 일관성이 단절되는 문제에 따른 것이다.

다음의 [표 1]~[표 2]는 이러한 변수들을 이용하여 수행한 총 11가지 OLS 회귀분석의 결과를 정리한 것이다.

1. 기본 회귀 분석

법인세율만을 설명변수로 하는 [1]의 회귀식을 기본 회귀식으로 하여 관련된 설명변수들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실증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추가되는 변수들의 법인세수에 대한 유의성을 t 검정통계량으로 확인하였다. 우선 법인세율 변수는 모든 유형의 회귀식에서 강한 유의성을 보이며, 이론적으로나 직관적 예상에 부합하는 부호로 추정되었다. 법인세율은 법인세수에 정(+)의 관계를 가지며, 세율이 높아질 때 법인세수가 증가하는 효과를 반영하였고, 법인세율과 법인세수의 비선형성(non-linearity)을 반영하는 법인세율의 제곱항 변수는

법인세수에 부(-)의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난다.

Clausing의 분해에 따른 나머지 세가지 변수인 법인소득의 과세비율과 이윤율, 경제내 법인비중은 회귀식에 따라 통계적 유의성이 다르게 나타난다. 우선, 법인세율 변수로 구성된 기본회귀식에 동 3개의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회귀식 [2]) 경제내 법인비중은 10% 유의 수준하에서 연관성이 있고, 나머지 2개 변수들은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특히, 법인소득의 과세비율과 이윤율 변수는 회귀식에 따라 계수 추정치의 부호가 달라지고, 통계적 유의성도 변화하면서 법인세수의 움직임에 안정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회귀식 [2]에 경기효과를 반영하기 위해 HP필터를 이용해 구한 명목GDP의 순환변동치와 명목GDP의 로그차분으로 구한 증가율 변수를 추가한 회귀식 [3]과 [4]에서는, 명목GDP의 성장률이 법인세수에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한 관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4]의 회귀식 추정 결과를 보면, 법인세율의 유의성이 유지되는 가운데 성장률 변수의 계수 추정치가 양(+)의 값으로 1% 수준에서 유의한데, 이는 경기에 민감한 법인세수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이다. [표 1]의 회귀분석 결과에 나타내지는 않았지만, 이월결손금(loss carried forward)을 통해 경기변동에 따른 법인세 과세기반의 변화를 반영해 보았으나, 계수 추정치가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는 법인세수에는 결손기업 보다는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이익법인의 영향이 보다 클 수 있음을 보여준다.

경기변수 대신 해외직접투자변수를 고려한 회귀식 [5]에서는, 명목GDP 대비 해외직접투자 비율('FDI')에 대한 계수추정치가 음(-)의 값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이는 해외직접투자가 확대되는 경우 법인세수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6]식에서 해외직접투자 변수를 경기변수와 같이 고려하는 경우에는, 경기적 요인의 영향이 법인세수에 보다 중요하게 작용하며, 해외직접투자가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OLS 회귀분석 결과: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1] 1970~2017	[2] 1980~2016	[3] 1980~2016	[4] 1980~2016	[5] 1980~2016	[6] 1980~2016
상수	0.284567*** (0.027127)	0.976643*** (0.602525)	0.819108*** (0.890172)	0.692469*** (0.422131)	0.804708*** (0.565660)	0.672458*** (0.428469)
법인세율	0.044360*** (0.00371)0	0.045823*** (0.010112)	0.047417*** (0.012176)	0.037244*** (0.007190)	0.047940*** (0.009458)	0.038109*** (0.007432)
법인세율 ²	-0.000533*** (7.65E-05)	-0.000632*** (0.000143)	-0.000647*** (0.000158)	-0.000546*** (0.000101)	-0.000593*** (0.000134)	-0.000542*** (0.000102)
과세비율		0.023653 (0.099365)	-0.014668 (0.186862)	0.321532*** (0.085970)	0.059348 (0.093723)	0.313448*** (0.088130)
이윤율		0.013331 (0.377810)	-0.037669 (0.437054)	-0.269659 (0.267366)	-1.107814* (0.585236)	-0.480578 (0.460931)
법인비중		5.997994* (3.120654)	5.564461* (3.634417)	4.749144* (2.182256)	9.408797*** (3.235666)	5.498896** (2.575488)
GDP 순환변동치			-0.198889 (0.816260)			
경제성장률				2.380853*** (0.816260)		2.258881*** (0.465973)
FDI					-0.208719** (0.087064)	-0.041965 (0.074262)
관측수	48	37	37	37	37	37
R ²	0.901	0.933638	0.933769	0.968897	0.944307	0.969236

주: 1) ()는 계수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 값임

2) *, **, ***는 통계적 유의도(significance)로, *는 10%, **는 5%, ***는 1%의 유의수준을 나타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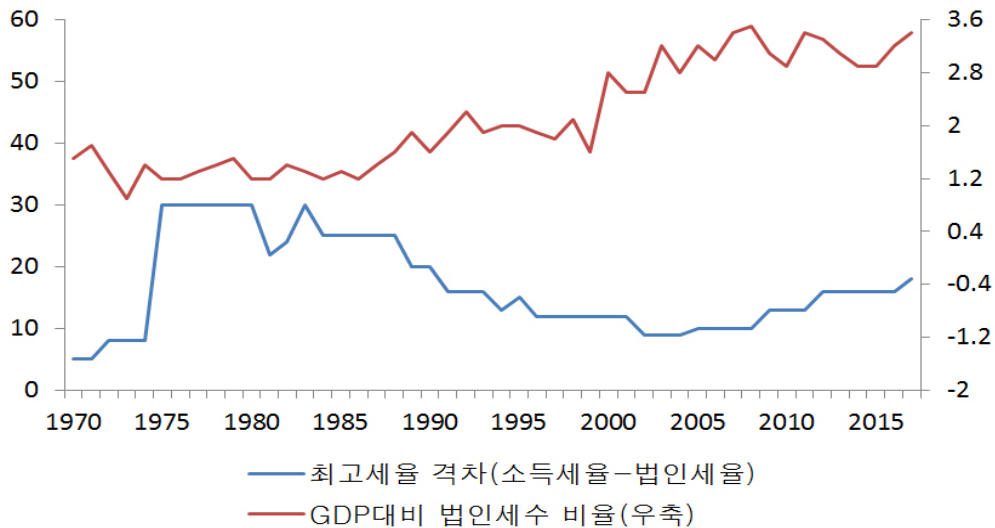
2. 확장된 회귀 분석

다음으로 [표 2]는, Clausing 회귀식에 세율격차 변수를 추가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7]의 회귀식에서는 우선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의 차이를 변수로 추가하였는데, 이는 법인세의 조세감면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이다. 회귀분석 결과 법인세율 변수의 유의성이 강건하게 유지되는 가운데, 추가한 세율차이 변수 역시 10% 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8]식에서는 동 세율차이 외에 소득세 부문과 법인세 부문간 최고세율 차이 변수를 추가하여 부문간 과세기반 이동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자 하였다. 회귀식 추정 결과, 동 변수의 추가에 따라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의 차이에 대한 계수추정치의 통계적 유의성이 [7]식의 10%에서 5% 이상으로 높아진 가운데,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차이에 대한 계수추정치도 10% 수준에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격차에 대한 계수가 과세기반 이동효과를 감안할 때 예상되는 바와 다르게 음(-)의 부호로 나타난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이는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가 확대되면 개인사업자의 법인화 등을 통해 과세기반이 상대적으로 세율이 낮은 법인세 부문으로 이동하며 법인세수 증가요인이 될 것이라는 예상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과세기반 이동효과가 크지는 않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난 Gordon and Slemrod(2000), Clausing(2007)과는 다른 결과이다.

다음의 [그림 7]에서와 같이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의 차이는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반면, 법인세수의 GDP 대비 비율은 증가세를 보이며 뚜렷하게 부(-)의 관계를 보이고 있다. 이후 2000년대 들어 세율차이가 상승세를 보이며 법인세수 비율과 정(+)의 관계를 보이는 듯하였으나, 2008년 이후 세율차이는 상승세를 보이는 가운데 법인세수 비율이 하락세를 보이며 다시 부(-)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기간별로 세율차이 변수의 영향이 다를 수 있음을 감안하여, 2000년 이후 더미변수를 사용하여 회귀식을 추정해 보면([11]식), 전체적으로 소득세율과 법인세율의 차이변수가 법인세수에 부(-)의 관계에 있기는 하나, 2000년대 더미변수의 경우 정(+)의 관계로 나타났다. 다만, 이 경우에도 더미변수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은 높지 않았다. 따라서 Clausing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차이에 따른 과세기반 이동의 효과가 주요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7]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 격차와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추이: 1970~2017년



자료: 국세청, 한국은행 자료를 이용하여 저자 계산

설명변수를 보다 추가한 [9]~[11]에서도 이러한 패턴은 유지되어, 소득세와 법인세 최고세율의 차이보다는 법인세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의 차이가 법인세수에 보다 유의한 영향을 주고, 예상에 부합하여 세율차이(즉, 조세감면 확대)가 법인세수에 부(-)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세율차이 변수의 유의성은, 경기변수인 명목GDP 성장률이나 해외직접투자 변수를 추가하는 경우에도 강건하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표 2] OLS 회귀분석 결과(계속): GDP 대비 법인세수 비율

	[7] 1980~2016	[8] 1980~2016	[9] 1980~2016	[10] 1980~2016	[11] 1980~2016
상수	1.213446* (0.574758)	1.813808*** (0.626900)	1.308465*** (0.452890)	1.329623*** (0.437932)	1.414434*** (0.439969)
법인세율	0.065227*** (0.012737)	0.057100*** (0.012833)	0.044880*** (0.009347)	0.051448*** (0.009806)	0.046332*** (0.010611)
법인세율 ²	-0.000843*** (0.000163)	-0.000639*** (0.000187)	-0.000545*** (0.000133)	-0.000576*** (0.000130)	-0.000517*** (0.000138)
과세비율	-0.104485 (0.108816)	-0.129303 (0.104632)	0.186762* (0.093857)	0.127519 (0.097018)	0.104320 (0.098121)
이윤율	0.606372 (0.439444)	1.014355** (0.467386)	0.437103 (0.346973)	-0.022733 (0.428602)	-0.072545 (0.427058)
법인비중	4.190224 (3.033126)	3.480774 (2.917589)	3.223375 (2.064043)	5.006702** (2.247561)	5.599144** (2.282503)
세율차이 (명목-실효)	-0.045195* (0.019793)	-0.049434** (0.019016)	-0.032087* (0.013817)	-0.041864*** (0.014511)	-0.043390*** (0.014446)
세율차이 (소득-법인)		-0.014075* (0.007109)	-0.010099* (0.005080)	-0.010591** (0.004919)	-0.012978*** (0.005265)
세율차이 더미 (dummy)					0.007382 (0.006125)
경제성장률			2.2104220*** (0.384342)	1.690515*** (0.442335)	1.613178*** (0.443340)
FDI				-0.120931* (0.070183)	-0.130660* (0.070069)
관측수	37	37	37	37	37
R ²	0.933638	0.950196	0.975946	0.978329	0.979476

주: 1) ()는 추정치에 대한 표준오차(standard error)임

2) *, **, ***는 통계적 유의도(significance)로, *는 10%, **는 5%, ***는 1%를 나타냄

IV. 요약 및 시사점

본 논문에서는 Clausing의 방법에 기초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실증분석을 하였다. Clausing은 GDP 대비 법인세수를 법인세율과 법인소득 과세비율, 이윤율, 경제내 법인비중으로 분해하고, 이를 기초로 하여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법인세수 결정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법인세수가 단위 소득에 대한 세부담 수준을 나타내는 법인세율 외에도 법인세 과세기반 및 조세회피유인 등에 관련되는 경제변수들에 의해 설명될 수 있음을 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Clausing의 법인세수 분해에 기초하여, 1970년대 이후 관련되는 경제변수에 대한 대리변수(proxy variable)와 법인세율 등 주요 조세변수들을 장기 시계열 자료로 구축하여, 우리나라 법인세수 결정에 대한 회귀식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Clausing의 분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래퍼곡선(Laffer curve)에서와 같이 법인세율과 법인세수는 일차적으로 정(+)의 관계에 있으나, 이차함수 형태의 비선형적인 부(-)의 관계도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하게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법인세율이 높아지면 법인세수는 대체로 증가하나, 법인세율이 일정 수준을 상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법인세수가 감소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나머지 경제변수를 보면, 경제내 법인비중은 대체로 법인세수에 유의한 정(+)의 관계로 나타났으나, 법인소득 과세비율이나 이윤율은 회귀식에 따라 추정치의 부호가 일관되지 않고 통계적 유의성이 높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인소득 과세비율이나 이윤율 변수에 이용된 영업잉여의 경우 법인 외에 자영업 부문도 포함되는데, 자영업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의 구조적 특징이 동 변수들의 법인세수에 대한 설명력을 낮출 수 있는 부분으로 고려된다.

이외 추가한 변수를 보면, 특히 명목GDP의 로그차분(log-differenced)으로 구한 증가율이 우리나라 법인세수에 매우 유의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경기에 따른 법인세수의 변동성이 단기적으로 큰 부분과 관련된다. 특히, 동 변수에 대한 계수 추정치가 회귀식별로 1.61~2.38의 범위에서 '1'을 상회하는 것은, 경제성장률 대비 법인세수의 변동성이 큰 현상을 반영한다(본문의 [그림 2] 참조). 또한, 이러한 경기변수를 회귀식에서 추가할 때 경제내 법인비중이나 법인소득 과세비율 등 다른 설명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도 높아져, 동 변수를 회귀식에 포함하지 않을 경우 누락변수(omitted variables)에 따른 회귀추정의 오차

(bias)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차이는 법인세수를 설명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제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Clausing의 연구 결과와 다른 것으로, 우리나라는 소득세 및 법인세의 최고세율 차이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과세기반 이동이 법인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주요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율 차이와 과세기반 이동, 세수 변동 등의 관계는 경제구조나 소득분포, 과세구간 및 세율로 구성되는 세율체계, 법인세와 소득세의 조세법상 관계 등에 따라 국가별로 달라질 수 있어, 향후 보다 깊이 있는 국제 비교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특별히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를 대상으로 분석함에 따라, 보다 미시적인 조세변수들을 회귀식에 반영할 수 있었다. Clausing은 OECD 국가들을 대상으로 함으로써, 대상 국가군이 분석기간에 자료가 있는 경우로 제한되고, 분석 자료도 해당 국가들에서 공통으로 수집 가능한 변수들로 한정되었다. 예를 들어, Clausing에서는 법인세수에 중요한 조세감면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반영하지 못하였는데, 본 논문에서는 국세청 신고자료로 구한 평균명목세율과 평균실효세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감면이 법인세수에 유의하게 부(-)의 영향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다만,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1970년 혹은 1980년 이후의 시계열 자료를 이용한 단순 OLS 추정에 의한 것으로, 기간 중 법인세수와 설명변수들과의 관계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였다. 소득세와 법인세의 최고세율 차이의 경우 더미변수를 추가하여 시기별 설명력의 변화를 살펴보았는데, 나머지 변수들의 경우에도 1970년대 이후 우리나라 경제구조나 조세체계의 변화가 여러 차례 진행되었음을 감안할 때, 이러한 구조변화를 반영하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부분이다.

참고문헌

- 김우철, 「외환위기 이후 법인세수 변동요인 분석: 기업의 세부담과 소득을 중심으로」, 한국조세연구원, 2007.
- 김유찬, “법인세 실효세율 변화의 요인 분해,” 「조세연구」 제17권 2호, 2017, 41~80쪽.
- 김학수, “법인세 부담 국제비교를 위한 법인세 감면을 추정 및 시사점,” 「재정학연구」 제3권 3호, 2010, 177~203쪽.
- 박수원·이효익, “법인세추징세액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제22권 1호, 2005, 133~155쪽.
- Auerbach, A. J., & Poterba, J. M., 1987, “Why Have Corporate Tax Revenues Declined,” *Tax policy and the Economy*, vol.1, pp.1-28.
- Bartelsman, E., & Beestma, R., “Why Pay More? Corporate Tax Avoidance Through Transfer Pricing in OECD Countrie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87, 2003, pp.2225-2252.
- Bénassy-Quéré, A., Fontagné, L. and Lahréche-Révil, A.,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he Prospects for Tax Co-ordination in Europe,” *CEPII working paper*, no.6, CEPII, 2000.
- Bretschger, L., & Hettich, F., “Globalisation, Capital Mobility, and Tax Competition: Theory and Evidence From OECD Countries,”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18 no.4, 2002, pp.695-716.
- Brill, A., & Hassett, K., “Revenue-Maximizing Corporate Income Taxes: The Laffer Curve in OECD Countries,”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working paper*, no.137, AEI, 2007.
- Clausing, K. A., “Corporate Tax Revenues in OECD countri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14 no.2, 2007, pp.115-133.
- Devereux, M., “Developments in the Taxation of Corporate Profit in the OECD Since 1965: Rates, Bases and Revenues,” *Centre for Business Taxation working paper*, University of Oxford, 2007.
- Devereux, M. P., Griffith, R., & Klemm, A., “Why has UK Corporation Tax Raised So Much Revenue?,” *Fiscal Studies*, vol.25 no.4, 2005, pp.367-388.
- Douglas, A. V., “Changes in Corporate Tax Revenue,” *Canadian Tax Journal*, 1990, pp.66-81.
- Gordon, R. H. & Slemrod, J., “Are Real Responses to Taxes Simply Income Shifting Between Corporate and Personal Tax Bases?,” *NBER Working Paper*, no.6576, NBER, 1998.
- Griffith, R. & Klemm, A., “What Has Been the Tax Competition Experience of the Last

- 20 Years?,”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Working Paper*, University College London, 2004.
- Gropp, R. & Kristina, K., “The Disappearing Tax Base: Is Foreign Direct Investment Eroding Corporate Income Taxes?,” *European Central Bank Working Paper*, no.31, European Central Bank, 2000.
- Suárez Serrato, J. C. & Zidar, O., “Who Benefits From State Corporate Tax Cuts? A Local Labor Markets Approach with Heterogeneous Firms,” *American Economic Review*, vol.106 no.9, 2016, pp.2582-2624.
- _____, “The Structure of State Corporate Taxation and Its Impact on State Revenues and Economic Activity,”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167, 2018, pp.158-176
- Kawano, L., & Slemrod, J., “How Do Corporate Tax Bases Change When Corporate Tax Rates Change? With Implications For the Tax Rate Elasticity of Corporate Tax Revenues,” *International Tax and Public Finance*, vol.23 no.3, 2016, pp.401-433.
- Kopczuk, W., “Tax Bases, Tax Rates and the Elasticity of Reported Income,”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89 no.11-12, 2005, pp.2093-2119.
- Mutti, J., *Foreign Direct Investment and Tax Competition*, IIE Press, 2004.
- Rodrik, D., *Has Globalization Gone Too Far?*, IIE Press, 1997.
- Slemrod, J., “Are Corporate Tax Rates, or Countries, Converging?,” *Journal of Public Economics* vol.88 no.6, 2004, pp.1169-1186.
- Swank, D. & Steinmo, S., “The New Political Economy of Taxation in Advanced Capitalist Democracies,”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vol.46 no.3, 2002, pp.642-655.

On the Determinant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Revenues

Lee, Yeongsook

Abstract

In this paper, I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corporate income tax revenues through the decomposition analysis of Clausing(2007). He decomposes the ratio of corporate income tax revenues relative to nominal GDP into 4 variables, as the corporate tax rate, the fraction of income that is taxed, profit rates, and the corporate share in the economy.

I make the dataset which contains the maximum tax rate of both individual income tax and the corporate income tax over 1970~2017 and the reported micro corporate taxation data including taxable income, tax base, calculated tax amount, loss carried forward, and etc. over 1980~2016.

I find some key results. First of all, the corporate tax rate is the most significant factor affecting the corporate income tax revenues in non-linear way. Second is that the economic growth and the corporate share of economy are the influential variables relating to the tax base. Lastly, the difference between the average nominal corporate income tax rate and the average effective corporate income tax rate is also important variable to the corporate income tax revenues through the tax deduction effect.

□ Keywords : decomposition, corporate tax rates, non-linearities, tax base, the difference between tax rates, tax deduction effect

